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34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각각의 면허·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대해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10명 이상

⑥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항제1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을 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¹⁾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각각 그 임무로 하고 있음.²⁾

-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다만, 업무 범위가 “의료” 및 “보건지도” 등 추상적인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³⁾

□ 이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 범위 규정으로 인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2021년~2024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828건에 이르고, 간호인력의 수술보조행위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법」 제정(2025.6.21.시행)에 따라 「간호법」에서 규정됨.

「간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다만, 의료기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현황(2021.~ 2024.) >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계		828	150	120	138	218	202
의사	치과의사	111	17	18	15	35	26
	한의사	113	31	18	13	34	17
	간호사	222	50	31	41	58	42
간호사	간호조무사	64	10	6	14	22	12
	의료기사	169	24	19	35	52	39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55	12	17	10	6	10
약사	한약사	94	6	11	10	11	56

자료: 보건복지부

□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해 왔으나,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임.

- 2019년에 구성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⁴⁾는 같은 해 ‘진료보조업무범위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의 범의를 구체화하여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이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의료기관 내 관리·운영 체계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2024년 2월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실시 및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진료지원업무제도화 자문단’을 운영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요건, 교육,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임.

- ‘의료법체계연구회’⁵⁾는 「의료법」의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전문가,

4)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함.

5) 위원장 1명, 의료분야 3명, 간호·요양분야 3명, 법률분야 2명으로 구성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9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등도 논의 사항에 포함됨.

□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분야 최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개별법에서 규정된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단체 추천인,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을 좁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업무조정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⁶⁾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회차	논의 주제
1차('23.9.15.)	위원회 운영 방안, 목표, 회차별 논의주제(안) 공유
2차('23.9.27.)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과 검토 필요과제
3차('23.10.18.)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 체계 비교
4차('23.11.1.)	간호 관련 현안 : 법과 현실
5차('23.11.15.)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제도
6차('23.11.29.)	노인 요양·돌봄과 의료법 개선 과제
7차('23.12.13.)	의료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간담회('23.12.28.)	의료법체계 연구회 -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8차('23.12.27.)	의료법의 개선과 의료행위의 쟁점
9차('24.1.30.)	의료법체계 개편 관련 권고문 논의
10차('24.2.20.)	

출처: 보건복지부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음의 20개 직종이 해당됨.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유권해석 현황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직종간 업무범위 갈등 사례 등을 참고할 때 모든 직종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6조의2제6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조정위원회 규모가 50~100명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문상으로는 보건의료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한 것 외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직종의 추천 위원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의 재량사항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동 법률안과 유사한 취지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2201230호)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두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조정위원회 성격	의결기관 (심의·의결)	자문기관 (심의)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사항	◦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	좌동
	◦ 보건의료인력간 협업체계구축	◦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 분담
	◦ 업무범위의 유권해석	-
	◦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행위별 분 과위원회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
회의 구성	규정 없음	매 회의마다 위원장 지정 위원 포함 25명으로 구성 (보건의료인 단체 추천인 과반수)
운영위원회	업무조정위원회 위임 사항 중재, 분과위원회 미조정 사항 조정	규정 없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구성	업무조정위원회 산하 구성
사무국	규정 없음	설치·운영 근거 규정 있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포함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불포함
시행시기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6개월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수용)

☐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직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램

2) 행정안전부(반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 설치보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⁸⁾

3) 대한의사협회(반대)

□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비전문가 위원의 구성은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음.

- 각 직역별로 자격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잠재적인 법정 분쟁 소지가 있고,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 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음.

4) 대한간호협회(신중검토)

- 7)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8)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 지역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해당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율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함.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지역별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고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6) 대한약사회(조건부 찬성)

-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함.

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 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찬성)

8) 대한임상병리사협회(찬성)

- 분과위원회 구성시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내부 논의를 실시하려는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자+소비자 비율을 2:1로 제안함.

9) 대한작업치료사협회(찬성)

- 의료기사 9개 직역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사·간호사 등과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10) 대한응급구조사협회(조건부 찬성)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⁹⁾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11) 대한병원협회(신중검토)

- 보건의료인력의 숙련도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위원회 차원에서 업무범위의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직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의료인력이 활동하며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곳은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는 위원을 추천할 근거가 없어 수정이 필요함.

12)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9)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원회에 환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